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1. 11. 7.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10월 29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1년 10월 29일
- 다. 상정일자 : 제8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2001. 11. 7)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은규

가. 제안이유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고, 여기에 맞춰 국가직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도 연장이 추진됨에 따라, 우리구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도 출산휴가를 연장하여 출산 전·후의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 건강 보호의 여건을 마련하고,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여성공무원의 공직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되, 2001년 11월 1일 출산한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함.(안 제24조 제2항 및 부칙)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건은 2001. 8. 14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2조제1항의 규정과 2001. 9. 28일 서울시장으로부터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이 이철 통보됨에 따라 우리구 여성공무원도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2001. 11.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유남렬 위원) : 11월 1일에서 7일 사이 출산한 공무원이 있는가?
- 답변요지(이은규 총무과장) : 없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01. 10.
제출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고, 여기에 맞춰 국가직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도 연장이 추진됨에 따라, 우리구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도 출산휴가를 연장하여 출산 전·후의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 보호의 여건을 마련하고,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여성 공무원의 공직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 글자

-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되, 2001년 11월 1일 출산한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함.(안 제24조제2항 및 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공무원법(2001.1.29 법률 제6400호) 제59조
- (2) 국가공무원복무규정 (1999.12.7 대통령령 제16610호) 제2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생략

서울특별시마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함

-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60일”을 “9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1월 1일이후 출산한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특별휴가) ①(생략)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u>60일</u>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⑨(생략)</p>	<p>제24조(특별휴가) ①(현행과 같음) ②----- ----- <u>90일</u> ----- ----- ③~⑨(현행과 같음)</p>